

실태조사 보고서

발행일 2021. 06. 17.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실내체육시설 99%가 매출 감소
10곳 중 1곳은 매출 80% 이상 감소
업체당 평균 2명 고용 줄어
10곳 중 6곳(59.7%)은 임대료 연체 중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도 26.8%

목차

목차	2
요약	3
실태조사 취지 및 개요	4
조사결과	6
업종·지역·사업장 수 등 기본정보	6
매출감소, 부채 현황 등 피해규모	8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피해현황	11
상가임대료 현황	1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상 및 지원 대책	14
결론	15

코로나19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21년 4월 27일(화) 부터 5월 17일(월)까지 3주간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의 피해 실태를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함.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내체육시설의 피해실태는 아래와 같음.

-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은 99%임. 이 중 약 3분의 1(35%)은 매출이 40% 이상 60% 미만 감소했으며, 매출이 80% 이상 감소한 사업주도 10.5%에 달함.
- 매출이 크게 감소한만큼 집합금지 기간동안 늘어난 부채는 더 크고 고용은 더 많이 줄었으며, 임대료 연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매출이 40% 미만 감소한 곳보다 부채는 23.6%, 임대료 연체는 14.2% 많았고, 고용을 줄인 곳도 17.4% 많았음.
-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약 6주간 이어진 집합금지기간 중 절반(52.1%)의 실내체육시설은 4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고 단 6주만에 1억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사업주도 15%에 달함.
-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의 피해는 종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침.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축소한 실내체육시설은 62.2%에 달하며 업체 당 평균 최소 2명 이상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이전엔 4인 이상을 고용한 실내체육시설은 32.2% 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9.6%로 크게 줄어듬.
- 코로나19 이후 임대료를 동결한 실내체육시설은 56.6%,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은 32.1%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1곳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인상해줘야 했으며, 임대료를 15% 이상 인상해준 곳도 3.9%에 달했음.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6곳(59.7%)는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곳도 4곳 중 1곳(26.8%)였음.

이에 코로나19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종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과 지원 △정부의 정확한 피해추계 △임대료 분담과 퇴거금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음.

실태조사 취지 및 개요

취지 및 배경

-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현재 누적 확진환자는 14만 8천명, 사망자는 1,992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일 신규확진자 수도 4~500명 대를 기록하고 있음 (2021.6.15.기준)
-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 집단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자 같은 달 22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함. 2020년 8월과 11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2.5단계로 단계적으로 격상하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카페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함.
- 특히 연말연시 자영업 성수기에 행해진 6주간의 집합금지 조치와 이후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집합제한 조치(오후 9시·10시 이후 영업제한조치 등)로 인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됨.
- 실제로 연말 집합금지·제한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지난 해 12월 마지막 주(12/21~12/27)에는 전국 65만개 업체의 매출이 전년보다 56%나 감소(이동주의원실 자료)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해 자영업자 대출잔액도 무려 118.6조원(전년대비 17.3%) 폭증한 8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장혜영의원실 자료).
- 코로나19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참여자 1,545명 중 95.6%인 1,477명이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평균 매출 감소율은 5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전체규모와 피해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집합금지·제한업종 종사자와 일반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보상 및 지원대상의 범위, 기준, 금액 등과 관련해 여야정 간 입장차가 뚜렷해 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음.
- 이에 코로나19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실태조사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이후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지원 대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음.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코로나19 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원사 및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 조사기간 : 2021년 4월 27일(화) 부터 5월 17일(월)까지 3주간 (총 21일)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참여자 :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

조사결과

업종·지역·사업장 수 등 기본정보

- 실태조사에 참여한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는 988명으로, 피트니스 48.3%, 필라테스요가 15.7%, 볼링장 10.4%, (실내)골프연습장 8.8%, 당구장 7.0%, 격투종목 6.0%, 종합체육시설 1.4% 순으로 나타남.
- 실태조사에 참여한 실내체육시설 사업장은 2단계 이상의 강화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가 시행된 수도권(75.4%)에 주로 소재하고 있었음.

[표1] 각 업종별 응답자 수와 비율

분류	응답자 수	비율
피트니스	477	48.3
필라테스요가	155	15.7
볼링장	103	10.4
골프연습장	87	8.8
당구장	69	7.0
격투종목	59	6.0
종합체육시설	14	1.4
기타	24	2.4
합계	988	100.0

[표2] 실내체육시설 사업장 소재지

지역	응답자 수	비율
서울	299	30.3
경기, 인천	446	45.1
강원	17	1.7
충청, 대전	54	5.5
대구, 경북	39	3.9
부산, 울산, 경남	95	9.6
광주, 전북, 전남	24	2.4
제주	14	1.4
합계	988	100.0

-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의 대다수(84%)는 1개의 사업장만을 운영 중이었으나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16%에 달했고, 4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응답자도 2.4% 있었음.
- 특히 볼링장(33%), 피트니스(17.8%), 필라테스요가(12.3%) 순으로 사업주 1명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음.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피해지원의 성격이 강했던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대부분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를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집합금지·제한조치는 사업장 각각에 적용되었음에도 지원은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볼링장, 피트니스, 필라테스요가 업종의 경우 이후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과정에서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를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현저히 적은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표3]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수

사업장 수	응답자 수	비율
1개소	830	84.0
2개소	115	11.6
3개소	19	1.9
4개소 이상	24	2.4
합계	988	100.0

매출감소, 부채 현황 등 피해규모

-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9%**에 달했음. 약 3분의 1에 달하는 응답자(35%)들이 매출이 40% 이상 60% 미만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10명 중 1명은 매출이 8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음.
- 지난 2월 실내체육비대위와 참여연대, 민변 등이 진행한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 소송당사자로 참여한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업주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2020년 12월 매출이 2019년 대비 각각 5.0%, 9.0%, 17.6% 수준에 머물렀음.[\(관련 보도자료 링크\)](#) 결국 연간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집합금지·제한기간으로 더 좁혀서 매출 감소율을 추산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표4]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여부

매출감소	응답자 수	비율
있다	978	99
없다	10	1
합계	988	100

[표5]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율

매출감소율	응답자 수	비율
20% 미만	75	7.6
20% 이상 40% 미만	276	27.9
40% 이상 60% 미만	346	35.0
60% 이상 80% 미만	177	17.9
80% 이상	104	10.5
해당사항 없음	10	1.0
합계	988	100.0

- 매출이 크게 감소한 만큼 부채가 크고 고용은 더 많이 줄었으며 임대료 연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이 40% 미만 감소했다고 응답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7.0%가 집합금지 기간동안 4천만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경우 무려 23.6%가 높은 60.6%가 4천만원이 넘는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남.

- 매출 감소가 클수록 고용을 축소 한 비율도 늘어났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40%** 미만 감소한 곳보다 고용을 줄인 곳이 **17.4%** 더 많았음.
- 매출감소율이 클수록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비율도 **14.2%**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인 업체의 경우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의 비율이 **51.3%** 수준이었지만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업체들의 경우 임대료 연체 비율이 **65.5%**로 증가함.

[표6] 매출감소율에 따른 부채규모 현황

매출감소율	부채규모	응답자수	비율
40% 미만	4천만원 미만	221	63.0
	4천만원 초과	130	37.0
40% 이상	4천만원 미만	247	39.4
	4천만원 초과	380	60.6

[표7] 매출감소율에 따른 고용 축소 비율

매출감소율	임대료 연체상황	응답자수	비율
40% 미만	고용유지	171	48.7
	고용축소	180	51.3
40% 이상	고용유지	196	31.3
	고용축소	431	68.7

[표8] 매출감소율에 따른 임대료 연체 현황

매출감소율	임대료 연체상황	응답자수	비율
40% 미만	연체사실없음	171	48.7
	연체	180	51.3
40% 이상	연체사실없음	215	34.5
	연체	408	65.5

-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약 6주간 이어진 집합금지기간 중 **47.9%**의 응답자는 **4천만원 미만**의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52.1%**의 응답자는 **4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응답함. 단 6주만에 1억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사업주도 15%에 달함. 여기에는 타 업종 대비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높은 실내체육시설의 업종별 특성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 부채규모가 클수록 고용을 축소 한 비율, 임대료를 연체한 비율도 높았음. 부채규모가 4천만원 미만인 사업주 중에서 고용을 축소 한 사업주의 비율은 **53.5%**였으나

부채규모가 4천만원을 넘는 사업주들은 70.3%가 고용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임대료 연체비율도 부채가 4천만원이 넘는 사업주들의 경우 4천만원 미만의 부채가 발생한 사업주들보다 임대료를 연체한 비율이 21%나 높았음. 결국 부채가 적을 때는 최대한 고용이나 임대료 납부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부채가 늘어날수록 고용축소와 임대료 연체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9] 집합금지기간 중 발생한 부채액

부채액	응답자 수	비율
2천만원 미만	230	23.3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243	24.6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200	20.2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108	10.9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9	6.0
1억원 이상	148	15.0
합계	988	100.0

[표10] 부채규모에 따른 고용축소 현황

부채규모	고용현황	응답자 수	비율
4천만원 미만	고용유지	220	46.5
	고용축소	253	53.5
4천만원 이상	고용유지	153	29.7
	고용축소	362	70.3

[표11] 부채규모에 따른 임대료 연체 현황

부채규모	연체현황	응답자 수	비율
4천만원 미만	연체없음	240	51.0
	연체	231	49.0
4천만원 이상	연체없음	154	30.0
	연체	359	70.0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피해현황

-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늘어나자 그 피해는 종사자들에게까지 미침.
-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축소한 실내체육시설은 62.2%에 달하며, 업체 당 평균 최소 2명 이상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고용인이 많아 피해가 더욱 큰 볼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피트니스 등의 경우 고용을 축소한 업체의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이전과 이후 상시근로자수를 0명으로 줄이고 사업주의 노동부담을 더 높인 업체의 비율이 23%에 달함. 4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도 코로나 이전 32.2%에서 9.6%로 크게 줄어 들었음.

[표12]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축소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축소	응답자 수	비율
있다	615	62.2
없다	373	37.8
합계	988	100.0

[표13] 업종별 고용을 축소한 비율

업종	전체 응답자 수	고용 줄인 업체 수	비율
피트니스	477	310	65.0
필라테스요가	155	88	56.8
볼링장	103	75	72.8
골프연습장	87	47	54.0
당구장	69	45	65.2
격투종목	59	31	52.5
종합체육시설	14	9	64.3
기타	24	10	41.7

[표14] 코로나19 이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수	응답자 수	비율
0명	186	18.8
1명	171	17.3
2명	164	16.6
3명	149	15.1
4-5명	145	14.7
6명 이상	173	17.5
합계	988	100.0

[표15] 코로나19 이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수	응답자 수	비율
0명	413	41.8
1명	203	20.5
2명	128	13.0
3명	150	15.2
4-5명	52	5.3
6명 이상	42	4.3
합계	988	100.0

상가임대료 현황

- 코로나19 이후에 대부분은 임대료를 동결(56.6%)한 상황임. 다행히 코로나19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도 32.1% 수준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1명(10.3%)은 건물주의 임대료나 관리비 인상 요구 때문에 임대료를 인상해줘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료를 15% 이상 인상해준 업체도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업종 특성상 샤워실, 대규모시설, 시설설치를 위한 특수한 건물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자영업보다 사업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물 수가 제한적이고 그만큼 임대료는 높게 책정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초기 시설비 투자도 큰 편이기 때문에 주로 폐업 후 업종전환보다는 양수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일반적인 임차인에 비해 비교적으로 열위에 놓이게 되는 특징이 있음.

- 응답자 10명 중 4명(39.9%)은 부채를 늘리거나 고용을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10명 중 6명(59.7%)은 최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고 응답했으며, 4명 중 1명(26.8%)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지금 당장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지난 4월 29일 실내체육시설비대위, 자영업범비대위,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관련 보도자료 링크](#))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요구에 사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임대료 연체로 인해 주거지를 가압류 당한 사례, 관리비를 30% 가까이 인상한 사례들이 소개되기도 함.

[표16] 코로나19 이후 임대료 조정 여부 및 비율 (관리비 포함)

구분	응답자 수	비율
0-5% 인하	317	32.1
동결	559	56.6
0-5% 인상	35	3.5
5-10% 인상	29	2.9
15% 이상 인상	39	3.9
기타	9	0.9
합계	988	100.0

[표17] 임대료 연체 현황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연체사실 없음	394	39.9
1개월	140	14.2
2-3개월	185	18.7
3개월 이상	265	26.8
기타	4	0.4
합계	988	1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상 및 지원 대책

-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이행된 이후 1월 18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오후 9시 이후,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는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됨.
- 사회적거리두기 대책과 관련해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들은 시간제한 폐지(41.8%), 자정(밤 12시) 이후 영업제한(32.0%) 순으로 합리적인 영업제한 조치라고 응답함.
- 선호하는 자영업자 피해 보상 및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손실보상(53.8%), 임대료 지원(34.8%), 보편적인 재난지원금(12.0%) 순으로 나타남.

[표18]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영업제한 시간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오후 10시 이후	147	14.9
자정(12시) 이후	316	32.0
영업시간 총량제한	19	1.9
시간제한 폐지	413	41.8
현행대로	67	6.8
기타	19	1.9
잘모름	7	0.7
합계	988	100.0

[표19] 자영업자 피해 보상 및 지원방식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손실보상	522	52.8
임대료지원	344	34.8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119	12.0
잘모름	3	0.3
합계	988	100.0

결론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 필요

- 코로나19 이후 대표적인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의 피해가 상당히 크고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9%에 달할 뿐 아니라 10명 중 1명은 매출이 8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힘. 실제로 연말연시 소위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집합금지 기간으로 범위를 좁히면 더 큰 매출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매출감소율이 크고 부채규모가 클수록 고용을 축소하고 임대료 연체가 많았음. 약 6주간의 집합금지 기간 중 약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4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으며, 1억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사업주도 15%에 달함.
-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코로나19 이후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6곳(62.2%)이 고용을 축소함. 고용인을 아예 0명으로 줄인 실내체육시설도 23%에 달했으며, 4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도 32.2%에서 9.6%로 크게 줄었음.
-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들과 종사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집합금지·제한업종들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부의 조치에 충실히 협조해왔음.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고 해당 업종의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기재부 중기부가 정확한 피해규모 추계 내놔야

-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4차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통해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이행해왔음. 올해 초부터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가 본격화되자 현재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 처리와 5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진행 중임.
- 그러나 집합금지 업종에 5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400만원이 지급되었던 지난 4차 재난지원금에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보니 실제로 임대료 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한 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였음.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매출 감소현황, 부채 증가현황, 임대료 연체 현황 등 다양한 피해현황과 문제점이 대략적으로나마 확인된만큼 기재부와 중기부는 매출감소, 영업이익 감소, 임대료 현황 등 각 업종별 피해현황과 피해규모 자료를 확보하여 이에 기반한 손실보상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함.

임대료 부담, 퇴거금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지난 해 9월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상가임차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로 인한 강제퇴거 조치 등이 잇따르자 6개월 간 임대료를 유예하고 만약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음. 그러나 12월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상가임차인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법안은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만료됨.
- 이번 실내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고정비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현재 부채를 늘리거나 고용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임대료만큼은 연체하지 않은 실내체육시설은 39.9%로 나타났고, 그보다 더 많은 59.7%는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상황임.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린 실내체육시설도 4곳 중 1곳(26.8%)에 달해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지금 당장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임차인들의 피해는 더욱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10곳 중 한 곳은 임대료를 인상(10.3%)했으며, 임대료를 15% 이상 인상해준 곳도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재원이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소요되어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효과가 크게 반감됨. 따라서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임대료에 대한 정부-임대인-임차인의 분담방안과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퇴거금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함.